



: 2019-09-09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6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원 고 A종중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19. 7. 24.
판 결 선 고 2019. 8.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C 임야 29,4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별지]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가 선정자들의 아버지인 D 등 4명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



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와 같은 종중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선정자들에게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결의에 따라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2. 가. 살피건대,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1)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공유재산으로서, 이러한 공유재산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정관 기타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이상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모든 성년 이상의 남성 및 여성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2018. 4. 22.자 종중총회를 소집하면서 피고 B 등 여성 종원들에게 따로 통지를 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 2019-09-09

있으므로, 그 총회에서 결의된 대표자 선임 등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 후 원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기 위하여 2019. 5. 25.자 종종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추인 결의 또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피 고 1/6

피 고 1/6

피 고 1/6

피 고 1/6

피 고 1/6

피 고 1/6



: 2019-09-09

선정자명단

1. B
 2. F
 3. G
 4. H
 5. I
 6. J
- [끝].